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담당업무 (1개 분야, 총 2명)

가. 채용예정분야

지원코드	채용 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 01	고용노동 분야	2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고용노동 분야	○ 고용노동부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학력, 전공, 성별) 무관

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회 더 참여기회 부여
 - ※ 참여횟수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결격사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

- ① 공무원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채용 시 가점제(3~10점 내외) 운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고, 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 형평 가점 (필요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해당자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우대 관련 필수 제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인턴지원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20.(목) 예정

- 기관홈페이지(<http://www.mpel.go.kr/local/gangwon/index.do>), 나라일터(www.gojob.go.kr)에 면접일정 등 게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지정한 주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가. 시험공고: 2026. 8. 5.(수)

나. 원서접수: 2026. 8. 12.(수) 9:00 ~ 8. 14.(금) 18:00까지

다. 서류전형: 2026. 8. 19.(수) 14:00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2026. 8. 20.(목)

마.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정책제안서 및 증빙): 2026. 8. 20.(목) ~ 8. 21.(금) 18:00

바. 면접시험일: 2026. 8.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사.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6. 8.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홈페이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나라일터(www.gojob.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12.(수) 9:00 ~ 2026. 8. 14.(금)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청년인턴 지원서 각 1부(필수 제출)

○ 정책제안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전형 전에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필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정책제안서(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저소득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

6.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 9. 1. ~ 2026. 12. 31.

다. (보 수) 월 2,156,880원(정액급식비 160,000원 포함)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고용관리과(☎033-269-3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